

총회 역사위원회 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명칭)

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역사위원회라 한다.

제2조 (목적)

본 위원회는 한국 교회 및 총회와 관련된 역사유적, 유물, 인물, 문화유산을 지정, 관리, 보존하고 총회 역사자료관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조 직

제3조 (위원회)

본 위원회는 4년조 12인(여성 1인 이상)으로 구성하되 10인은 공천위원회에서 선정하고 2인은 위원회 추천으로 한다. 단 위원회 추천위원 2인은 역사 전문인으로 한다.

제4조 (분과위원)

본 위원회는 역사 유적, 유물, 인물, 문화유산의 종별에 따라 이를 분장, 심의하기 위하여 그 분야에 따라 분과위원을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은 위원회가 선정한다.

1. 유적유물 분과위원 : 유형·무형의 유적, 유물에 대해 심의한다.
2. 인물선정 분과위원 : 한국 교회의 신앙 전승과 총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를 심의한다.
3. 문화유산 분과위원 : 기타 문화유산에 대해 심의한다.

제5조 (총회 역사자료관 운영)

본 위원회 총회 역사자료관을 총회총무 책임 하에 운영하며 운영세칙을 별도로 둔다.

제3장 임 원

제6조 (임원)

1. 본 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둔다. 위원장 1인, 서기 1인
2.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총회 후 첫 회의를 정기회로 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.

제4장 회 의

제7조 (회의)

1. 위원회 :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2. 분과위원 : 필요에 따라 분과 위원장이 소집하여 심의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.

제5장 재 정

제8조 (재정)

본 위원회의 재정은 총회의 일반 예산과 기부금 및 현금으로 한다.

제6장 개정 절차

제9조 (개정)

이 규정은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2. 이 규정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회의 법규 및 통상 관례를 준용한다.

2002년 9월 제87회 총회 제정
2008년 9월 제93회 총회 개정
2013년 9월 제98회 총회 개정
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
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